

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 청 인	①상 호 및 법 인 명		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	
	③대 표 자 성 명		④주 민 등 록 번 호	
	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(☎)		
	⑥사 업 전 환 일		⑦종전업종양도·폐지일	
	⑨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
신 청 내 용				
⑨과 세 연 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⑩업 태 · 종 목 (분 류 기 호)	()	⑪존전(기준)의 업태·종 목(분류기호)	()	
⑫사업전환유형	⑬□중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			
	⑭□기존의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 추가			
⑮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 전 과세연도의 매출액(⑭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		원	<16>⑮의 30%	원
<17>당해사업연도의 총매출액 (⑭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	<18>계		원	100%
	<19>기존업종의매출액		원	<20> %
	<20>신규업종의매출액		원	<22> %
<23>감면대상소득금액	원		<24>감면비율	%
<25>감면대상세액	□소득세 □법인세			원
<26>최 저 한 세 적 용 감 면 배 제 금 액	원			
<27>감면세액(<25>-<26>)	원			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				
※ 구비서류 : ⑮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				수수료
※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.				없 음

※ 작 성 요 령

(뒷쪽)

1. ⑥사업전환일은 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입하고,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과세기간의 총 매출액의 70%이상 점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입합니다.
2. ⑦란에는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을 기입합니다.
3. ⑩·⑪란에는 업태·종목을 기재하고 ()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제분류기호(5자리수)를 기입합니다.
4. ⑮~<22>란은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기입합니다.
5. <20>·<22>란에는 총매출액 <18>에서 <19>·<21>란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합니다.
6. <26>란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(1)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.